

1. 제정이유

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(법률 제21260호, 2025. 12. 30. 일부개정, 2026. 7. 1. 시행)됨에 따라,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 및 방법(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)

- 1)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함
- 2)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
- 3)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,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) ①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(이하 이 조에서 “인권침해 예방 교육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
2.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
3.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
4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 방안
5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②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
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
 3.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